

## ● ● 국내동향 ● ●

### 서울남부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사과방송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11월 1일, MBC 'PD수첩'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인 조능희 PD, 시사교양 부국장 겸 진행자였던 송일준 PD 등 제작진 4명이 자신들의 회사인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2011가합2362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08년 4월 29일 23시에 방영된 PD수첩 '진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 후, 해당 방송은 허위보도라며 농림수산 식품부로부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MBC가 2011년 9월 15일, MBC 뉴스 데스크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해 「MBC, 'PD수첩'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방송을 내보내자 PD수첩 제작진은 판결 내용과 다른 사과방송을 했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MBC 측은 “이 사건 사과보도의 중점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 내용 중 일부 사실을 허위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취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다짐과 사과의사를 표시한 데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 허위였는지는 논쟁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심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심판 또는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이 특정 방향으로 판단하였다고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사과보도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고 보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서 피고가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 등은 기각했다.

### KBS 논평에 대한 비판기사,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1월 15일, KBS 논평을 비판한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이유로 KBS가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6782)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8월 KBS의 '뉴스해설' 프로그램에서 한 해설위원이 당시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관해 '공정성·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했다. 그러자 미디어오늘은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 진행'이라는 제목 하에 해당 논평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KBS와 해설위원 측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어 그만큼 비판의 수인 범위도 넓어야 한다.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

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서는 안 된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 진행’이라는 제목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본문의 내용도 전체적인 논평의 흐름을 볼 때 미디어오늘이 KBS의 논평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순 없다. 적시된 전제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미디어오늘의 기사 내용은 공직후보자들에게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기에 기사가 전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덧붙였다.

## 인터넷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대한항공, 일부 승소

대한항공이 회사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48건의 기사로 인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으며 인터넷언론사인 프라임경제 외 소속 직원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프라임경제는 2010년 12월 9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 대한항공에 관해 총 48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재판부는 이 중 45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자수첩] 운항지연, 대한항공 고객들만 연락 못 받았다”, “대한항공이 ‘나쁜 언론’ 기획한 이유는?”, “재벌의 언론 재갈물리기 ‘이제 그만’” 등 3건의 기사에 관하여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회사 직원들에게 광고료 또는 협찬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불리한 기사

를 게재하여 피해를 줄 것처럼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위 원고회사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인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별도의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해당 취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 성폭력 사건 보도, 2차 피해 유의해야

성폭력 사건에 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더욱 심각한 상처를 안길 수 있다며 언론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월 15일 ‘피해자 권리로서의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주제로 제주YWCA 강당 3층에서 열린 2012 성폭력 추방 주간 토론회에서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장은 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해 ‘성폭력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정의하며, ‘언론의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행태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사에서 강간 등을 ‘몸쓸짓’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범죄를 희석화하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죄책감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월 29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다운)는 언론이 피해자가 특정 될 수 있는 인적사항 공개, 사건의 핵심을 벗어난 선정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재련 변호사는 8월 발생했던 나주 여아 납치·성폭행 사건을 예로 들며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

로 인한 자세한 묘사,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등 사건의 핵심을 벗어난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보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주장하며 언론보도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등을 강조했다.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짐과 함께 언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에 특종을 향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언론의 관심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해당 보도로 인해 자칫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안긴다는 점을 인식하여 취재를 담당하는 일선 기자들에게 자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언론중재위원회, 성균관대 로스쿨과 공동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1월 9일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공인 보도와 언론조정중재’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진행은 구율화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변호사)이 맡았다. 1부 토론회는 ‘공인 가족에 대한 실명보도, 정당인가?’를 주제로 공인의 범위, 혐의보도와 정정보도, 공인의 초상권 등에 관한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공인의 가족도 공인으로 봐야할 것인가에 대해 “공인의 가족에 관한 사항이 공인의 사회적 평가와 연결될 정도의 사건·사고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인정되므로, 사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 아니라 ‘공적 연관성’을 갖는 공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공인의 가족도 공인으로 봐야한다는 의견과 “우리나라 판례는 정치인과 같은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인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 외에는 공인으로 판단한 적이 거의 없다. 이처럼 공인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기

에 단지 공인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범죄혐의 보도 시 그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순 없다”며 공인의 가족은 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2부 토론에서는 ‘공인 관련 사생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나?’를 주제로 공적 관심사의 범위, 과거 공인의 현재적 공인성 등의 쟁점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5년 전에 퇴역하여 지금까지 일반인으로서 살아온 사람이, 그러한 과거의 지위에 근거하여 아직도 공적 인물이라고 판단되어야 하는지는 의심스럽다”며 과거에 공인이었다 하더라도 현재 공인이라 볼 수 없다면 그에 관한 사진 게재는 초상권 침해라는 의견과 “고위공직자는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각종 예우를 받으며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재직 당시의 경력을 바탕으로 퇴임 후에도 정치인, 기업체 임원, 대학 교원 등 사회 각 분야의 중요한 직책을 언제든지 맡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군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인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되었다.

1부와 2부에 걸친 열띤 토론이 끝난 후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부원장은 강평을 통해 “학생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왜 조정중재제도가 필요한가를 알았으면 한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범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고, 비용이 적고 절차가 신속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ADR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제도를 나라 안팎으로 더 널리 소개하고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더욱 많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다소 과장된 부정적 이용후기, 명예훼손 아니다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비판적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

거하여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1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2012도10392)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육아 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에 9회에 걸쳐 자신이 출산 후인 2011년 12월 14일부터 2주 동안 머물렀던 산후조리원 및 원장에 관한 불만 사항을 담은 이용후기를 게재했다. 이에 산후조리원 측은 산후조리원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후기를 객관적으로 볼 때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한 소비자로서 자신이 직접 겪은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이용후기를 작성하였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피고인이 지적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임산부들에게 관심과 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비록 산후조리원 이용대금의 환불과 같은 사익에 관한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 ● ● 일본동향 ● ●

번역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도쿄고법, 취재원의 정보만을 근거로 잘못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손해배상명령

프리저널리스트인 쿠로야부 테츠야(黒薙哲哉)가 웹사이트에 올린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요미우리(讀賣)신문 세이부분사와 사원 3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환송항소심공판에서 도쿄고등법원은 2012년 8월 29일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최소한의 취재조차 하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사원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 기업의 손해도 가법지 않다”고 판단, 쿠로야부에게 총 11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신문협회보 2012년 9월 18일자 보도에 의하면, 쿠로야부는 지난 2008년 자신의 웹사이트에 ‘요미우리신문 세이부분사의 사원 3명이 다음날 조간에 넣을 광고전단지를 신문판매소에서 무단으로 들고 나갔다. 절도에 해당하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기사를 올렸다. 그러나 실제로 광고전단지는 판매소장의 양해 하에 반출되었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 세이부분사는 인터넷에서 기사가 확산되어 사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며, 정신적 고통과 함께 회사의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로야부씨는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며 웹사이트에 반론문을 게재할 기회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인터넷상의 정보는 불특정 다수가 순간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한 번 손상된 명예의 회복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최고재판소가 2012년 3월 세이부분사 패소의 1, 2심 판결을 파기,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도쿄고법에 심리를 환송했다.

## 최고재판소, 무기징역 수형자 범행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

외국인 여성에 대한 준강간치사죄로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된 오리하라 쇼지(織原城二)가 요미우리(讀賣)신문 도쿄본사의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는 2012년 9월 19일 양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신문사 측에 33만엔의 배상을 명한 2012년 2월의 도쿄고법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문협회보 2012년 9월 25일자에 의하면, 도쿄고법은 오리하라 자택에서 여성을 폭행하는 비디오 테이프 약 4,800개가 압수되었다는 등의 4월 8일자 조간기사에 관해서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취재가 필요했다”고 지적, 명예훼손을 인정했으며 오리하라가 사망한 여성과 약혼을 위장했다는 등의 2001년 1월 28일자 조간기사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진실”이라고 판단했다.

1심 도쿄지법은 2010년 10월 모든 기사에 관해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55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 오사카고법, 기사의 주요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며 손해청구 기각

상해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한 남성이 경찰의 발표와 신문사의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사카부(大阪府)와 아사히(朝日)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사카고법은 2012년 9월 20일 이 남성의 청구를 기각, 아사히신문에 22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2012년 4월의 1심 오사카지법 판결을 파기했다.

신문협회보 2012년 10월 2일자에 의하면, 오사카경찰은 2008년 12월 오사카부 이바라키시에서 발생한

괴한습격사건의 살인미수 용의자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수사과 등을 상대로 취재하여 당시 시내에서 발생하고 있던 유사사건을 염두에 두고 12월 6일자 조간에서 ‘오사카경찰은 유사사건과의 관련을 조사한다’, ‘현장의 CCTV에 촬영된 남성과 유사하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남성은 해당 발표와 기사에 대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까지도 자신이 범인이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급된 CCTV의 위치도 현장이 아닌 자신의 자택부근에 있어 해당 내용들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 측은 CCTV는 맥락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기사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오사카고법 재판부는 “남성이 체포되어 오사카경찰이 유사사건과의 관련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 기사의 주요부분은 진실이며, CCTV는 보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 ●●미국동향●●

### 탐 크루즈,

### 자신이 딸을 버렸다고 보도한 잡지사 고소

L.A. Times 10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헐리우드 인기스타인 탐 크루즈(Tom Cruise)가 10월 24일, 케이티 홈즈(Katie Holmes)와의 이혼이 공식화 된 이후 둘 사이의 딸인 6살 된 수리 크루즈(Suri Cruise)에 대해 “아빠로부터 버려졌다(ABANDONED BY HER DAD)”고 보도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위클리 라이프 앤 스타일(Weekly Life & Style) 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우어 퍼블리싱(Bauer Publishing Co.)을 상대로 5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탐의 변호사들은 그의 딸인 수리가 울고 있는 사진에 “아빠로부터 버려졌다”는 타이틀을 달고 메인표지에 실어 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 두 번씩이나 탐의 대리인들이 그 이야기가 잡지에 실리기 전에 “진실 여부”를 제공함으로써 내용을 수정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탐의 변호사들은 해당 잡지사의 7월 30일자 판매본을 7월 18일에 입수했다. 변호사들은 해당 기사를 읽어본 후 내용 중 수리를 버렸다고 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탐이 영화를 찍고 있었지만 수리와 정기적으로 통화를 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탐의 변호사 중 한 명인 버트 필드(Bert Fields)는 해당 잡지사의 편집자에게 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편지를 썼지만 그 요청은 거부되었다.

버트 필드는 L.A. Times와의 인터뷰에서 “탐은 수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정한 아버지다. 그가 딸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며 지나치게 화려한 헤드라인에 눈물이 가득한 수리의 사진과

함께 그런 글을 게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버트 필드는 “탐은 특하면 소송을 거는 남자가 아니다. 그 기사가 너무 멀리 가 버렸기 때문에 이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추악한 마약판매원 같은 이들이 탐과 수리의 관계에 대한 역겨운 거짓말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명예훼손 판결로 죄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탐과 케이티는 지난 여름 결별했으며 대중 연예신문과 연예 전문매체들에 의해 집중 보도되면서 갑작스럽게 이혼했다.

### 구조는 외면한 채 촬영에만 몰두한

### 뉴욕 포스트 기자에 대한 비난여론 확산

폰 해킹 사건으로 영국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루퍼드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이 또 한 번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이번엔 뉴스코퍼레이션이 소유한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의 커버페이지의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됐고 비난여론은 점차 확산되었다.

뉴욕 포스트는 12월 5일자 신문 커버페이지에 지하 철역에서 열차와 부딪치기 직전의 한 남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 ‘this man is about to die, DOOMED’(이 사람은 곧 죽는다, 운이 다했다)는 제목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매체는 구조는 생각하지 않은 채 촬영에만 몰두한 사진기자과 이를 게재한 뉴욕 포스트를 비난했다.

이 사진은 12월 3일 오후 12시 30분 쯤 맨하탄 49스트리트역 플랫폼에서 다른 승객을 괴롭히던 20대 흑인 남성과 이를 말리던 퀸즈의 엘름허스트(Elmhurst)에 거주하는 한기석(58세) 씨 사이에 시비가 붙던 중, 흑인 남성이 한 씨를 선로로 밀어 떨어뜨려 한 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기 직전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이 문제의 사진을 촬영한 뉴욕 포스트의 프리랜서 기자인 R.우마르 아바시(R. Umar Abbasi)는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벌어졌다(It all happened so fast)”고 말하며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자신은 열차의 기관사에게 위협을 전하기 위해 계속하여 플래시를 터트렸다면 당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항변했다.

그러나 그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뉴욕 타임즈의 한 기자는 ‘그 사진의 게재는 보기 역겨운 도덕과 상업 사이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또한 기자는 이번 사건이 비단 그 사진을 찍은 R.우마르 아바시만을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며 최근의 현실을 꼬집었다. 기사에서는 “이 남자가 전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고 복잡한 도시에서 홀로 선로 위에 서 있었던 것은, 우리가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상기시킨다. 사진기자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구조하려 하지 않았고, 플랫폼의 그 누구도 행동에 옮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다른 이들의 고통과 위협에 대한 무관심은 그 플랫폼에 제한되지 않았고, 도시, 국가에 대해서도 제한되지 않았다. 이것이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악한 현실이다”라 게재하며 무관심한 현재의 세태에 대해 꼬집었다.

## ●●영국동향●●

### 오보 낸 언론사, 발 빠른 대응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감액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 10월 31일자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항소법원은 한 남성을 강간범으로 잘못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트리니티 미러(Trinity Mirror) 그룹의 더 피플(The People) 지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75,000유로에서 50,000유로로 감액했다.

더 피플 지는 2010년 9월 10일, 2007년에 발생해 널리 알려졌던 Baby P(피터 코넬리; Peter Connolly) 살인사건에 관한 뒷이야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기사에서는 피터의 아버지(실명이 공개되지 않음)가 14세의 여자 아이를 강간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피터의 아버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했으며, 명백한 오보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1심 법원은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5,000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10월 31일 항소법원(수석재판관 Neuberger)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이보다 25,000유로 감액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수석재판관 Neuberger는 “훌륭한 성품을 가진 남성에 대해 어린 여자 아이를 강간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기존의 손해배상액이 과장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점, 발 빠르게 해당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기사를 정정했으며 원고에게 유감을 표한 점, 빠른 정정으로 인해 오보를 읽거나 들었던 사람의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은 차감되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액 감액 이유를 밝혔다.

## BBC, Newsnight 오보관련 보고서 발표

Herald Scotland 11월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의 Newsnight 프로그램 오보와 관련한 보고서가 BBC 스코틀랜드 디렉터인 켄 맥쿼리(Ken MacQuarrie)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Newsnight 프로그램은 11월 2일, 익명의 보수당의 고위급 인사가 80년대 성적학대를 자행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으며, 보도 후, 언급된 익명의 보수당의 고위급 인사는 대처 진영의 전직 보수당 재무담당자인 맥알파인(McAlpine)이었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맥알파인 측이 이를 공개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성적학대의 피해자인 스티브 메샴(Steve Messham) 또한 그가 자신을 성적학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BBC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해당 오보에 관해 조사를 담당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켄 맥쿼리 디렉터는 보고서에서 회사의 주력 뉴스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확인사항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었다고 주장했다. 보도를 내기 전 스티브 메샴에게 맥알파인의 사진도 보여준 바 없으며, 최신의 검증된 사실을 제공하기 위한 두 번째 희생자의 추적도 불가능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오래되고 복잡한 내용에 관해 취재하면서 취재 시작 4일 만에 보도가 된 점,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맥알파인에게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점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기술했다.

당시 최종 편집본의 방송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해서도 혼란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전(前) 편집책임자인 피터 리폰(Peter Rippon)이 'Top of the Pops' 프로그램 사회자인 고(古) 지미 세빌(Jimmy Savile)의 소아성애자 행위에 관한 보도를 지연시킨 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의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편집 관리 구조가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

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일 사임한 조지 엔트위슬(George Entwistle) 사장의 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팀 데이비(Tim Davie)는 뉴스 중계를 위한 편집 관리 구조는 다시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BC는 이외에도 54일 동안 사장으로 재직했던 엔트위슬 前 사장의 45만 유로에 달하는 1년 연봉을 모두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 ● ● 프랑스동향 ● ●

김이정(서강대 프랑스문화학 강사)

### 칸 IMF 전 총재, 여자친구와 있는 사진 게재한 잡지사들 상대 손해소송 승소

성추문 사건으로 몰락했던 IMF 전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Dominique Strauss Kahn)이 미행 등과 같은 자신을 향한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 참을 수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프랑스 뉴스사이트인 melty.fr 10월 16일자 기사에 따르면 칸 전 총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매체들의 태도를 ‘진짜 인간 사냥’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염증을 표현하는 수위 높은 표현이다. 칸 전 총재는 또한 “사람들이 나의 사생활을 조롱하기 위해, 그리고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교훈적인 투명성이라는 애매모호한 핑계로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 사방에 폭로하기 위해 나의 상황과 법정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자기 멋대로 부당하게 악용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제발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칸 전 총재는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심정을 소송을 통해 매체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10월 16일, 칸 전 총재가 <클로제>와 <VSD>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9월초 자신이 한 여성의 어깨를 감싼 채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사진들을 게재하고 ‘스트로스 칸이 새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으로 보인다. 칸은 남의 눈을 신경쓰지 않고 대중 앞에 나서길 좋아한다’고 게재한 <클로제>와 <VSD>에 대해 칸 전 총재는 자신의 일반인 여자친구인 ‘미리암 라우피르’와 함께 총 13만유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의 변호사는 그 잡지사들이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다는, 스탈린주의적인 보도관”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31일, 파리 지방법원은 <VSD>는 두 사람에게 2만3천유로(칸에게 8천유로, 미리암에게 1만5천유로)를 지불하고, 다른 주간지 <클로제>는 1만5천유로(칸에게 5천유로, 미리암에게 1만유로)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같은 사진을 게재한 잡지사 <Voici>에 대해서도 11월 27일, 원고들에게 2만유로(칸에게 5천유로, 미리암에게 1만5천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파리 지방법원의 판결로 이 세 잡지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사유로 원고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모두 58,000유로에 달한다.

판결 때마다 법원은 미리암 라우피르가 그때까지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녀는 이 사진들이 게재됨으로써 3주 동안 노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원고들의 사진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케이트 미들턴 가슴 노출 사진 게재한 클로제, 사생활 침해로 피소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그의 아내 케이트 미들턴은 9월 14일에 프랑스 잡지인 <클로제>가 케이트의 가슴을 드러낸 사진들을 발표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7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정보는 낭테르(오 드 센 지방) 검사실에 의해 확인됐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 9월 17일자 기사에 따르면, <클로제>에 발코니에서 상반신을 벗은 케이트의 사진들이 실린 후, 왕실은 사진들의 대규모 확산을 막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을 저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아일랜드 잡지 <아이리시 데일리 스타>가 <클로제>의 기사를 다시 실은 데 이어 17일 이탈리아 잡지 <치>가 ‘왕실 스

캔들 : 여왕이 벗었다'라는 제목의 38쪽짜리 특집 기사에서 사진들을 다시 실었기 때문이다. 이 잡지는 1997년 파리에서 파파라치들에게 쫓기던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다이아나의 사진들을 2006년에 발표함으로써 이미 유명해진 바 있다.

〈클로제〉와 〈치〉를 소유한 몬다도리 출판사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사의 결정을 옹호했다. 몬다도리 출판사의 사장인 마리나 베를루스코니는 몬다도리는 “언론의 자유를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언론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것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탈리아의 전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딸이다.

이러한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윌리엄과 케이트는 동요되지 않은 모습으로 왕세손의 할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을 순회했다.

이 왕족 부부의 법적 조치에 대해 언론 소송 전문인 크리스토프 비고 변호사는 “출처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급속심리판사는 〈클로제〉에 출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기자들의 출처를 보호하고자 하는 프랑스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덧붙혔다. 그는 ‘원칙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때로는 이 법이 제멋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급속 심리 판사는 자신의 권한에 대해 극단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 왕세손의 비서실은 “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단호한 법적대응 의지를 밝혔으나, 9월 20일 덴마크 잡지 ‘세오그 호르’가 케이트의 하반신 노출 사진을 게재하는 등 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 프랑스 언론재벌 비방디 그룹의 카날 플뤼스, 디렉트 8과 디렉트 스타 채널 인수

레지프레스 9월호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쟁촉진위원회(Autorité de la concurrence)가 언론재벌인 비방디 그룹(Vivendi)의 자회사인 카날 플뤼스(Canal+)가 조건부로 TNT(전국 디지털 텔레비전) 채널들 중에서 디렉트 8(Direct 8)과 디렉트 스타(Direct Star)를 사들이는 것을 인가했다.

경쟁촉진위원회가 크게 염려한 주된 위험요소들은 카날 플뤼스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으로 인한 권리 획득과 관계된 것이었다. 따라서 카날 플뤼스는 자신들이 보유한 유료, 무료 채널들에서 동시에 방영할 미국 영화나 미국 원어판 시리즈물들을 여섯 개의 미국 대형 스튜디오(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워너, 소니, 폭스, 디즈니) 중 단 한 곳에서만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카날 플뤼스는 영화가 개봉되는 해와 동일한 해에 영화에 대한 유료 방송과 지상파 방송 방영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비방디와 카날 플뤼스는 그들의 투자의 대부분을 중간 예산 영화에 할애해야 하며, 대규모 예산이 드는 영화에 대한 배급권도 제한된 편 수 안에서만 선택권으로 획득할 수 있다(최대 1500만 유로 이상 예산의 영화는 두 편, 1000만에서 1500만 유로 사이 예산이 드는 영화는 세 편, 700만에서 1000만 유로 사이의 예산이 드는 영화는 다섯 편).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별개의 회사에 속한 특별팀을 통해 최신 영화와 시리즈들에 대한 유무료 방영권을 각자 따로 협상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디렉트 8과 디렉트 스타 인수 이전에 이 두 채널이 카날 플뤼스 소유의 영화 제작사 겸 배급사인 스튜디오 카날과 체결한 프랑스 영화 구매 권은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스튜디오 카날은 경쟁하는 무료 채널들보다 좋은 조건을 디렉트 8과 디렉트 스타에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카날 플뤼스

는 관련된 모든 배급사들에 대해 차별 없고 투명한 경쟁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중계권을 양도할 것을 약속했다.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이 모든 약속사항들은 경쟁촉진위원회의 철저한 감독을 받을 것이다. 이 제는 시청각최고심의회(CSA,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가 이 인수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시할 차례다. 이 약속사항들은 채널에 관한 협약의 추가조항의 대상이 될 것이며 협약에 관해서는 시청각최고심의회(CSA)와 카날 플뤼스가 함께 협상할 것이다.

## ● ● 해외통신원 보고 ● ●

송동현 통신원  
(런던 Goldsmiths College Media & Communications 박사)

### 레버슨 청문회 최종보고서 발표

지난 11월 29일 2,000페이지 분량의 레버슨 청문회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에서 레버슨 판사는 언론규제를 위한 새로운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률기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문회 시작 이후 언론계가 제시한 새로운 기구와 관련한 제안서는 언론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레버슨 청문회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청문회 결과

보고서에서 가장 비판받은 부분은 바로 일부 언론의 비윤리성이었다. 레버슨 판사는 기자들과 편집인들의 행동에 대해 '전반적인 언론계의 윤리와 행동을 탈선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언론계 중 어느 부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본적 윤리의식을 가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삶을 황폐화 시켰다'고 청문회 조사결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더불어, 그는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불행한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언론의 행위는 터무니없는 불법적 행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언론의 비윤리성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의 강도는 폰 해킹 사건에 대한 언급에서 그 수위가 높아지는데, 레버슨 판사는 폰 해킹과 관련된 뉴스오브더월드 발간인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업은 직원이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오싹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뉴스오브더월드는 그렇지 않았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 그들은 신문사 직원의 반발에 휘둘렸다'고 조사결

과를 언급하였다. 그는 단순히 뉴스오브더월드의 사례만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언론계의 비윤리성을 비판하며: “너무 많은 신문사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감 없이 개인의 삶이 연루된 기사를 쉽게 유폐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언론계의 나태함을 비판하고 규제해야 할 PCC는 두말할 것 없이 ‘기관의 임무를 다 하지 못했고, 이에 새로운 대체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비판을 담은 최종 보고서에서는 PCC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들을 자율 기관이라고 칭함으로 공중의 기대에 부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레버슨 판사는 실질적으로 PCC는 불만처리기관으로 봐야한다고 결론지었다. 그 원인으로 PCC의 체계적인 구조결핍과 언론사로부터의 비독립성이 지적되었는데, 그 사례로 레버슨 판사는 편집인 강령위원회(The Editors' Code Committee)는 규정을 만들어 편집인을 규율했어야 하는데 현직 언론 편집인으로 구성되며 PCC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정이사회(The Press Standard Board of Finance, PressBoF)에 의해 임명된 이사들은 전직 언론업계 종사자들이었으며 PCC의 회계 및 의장 선출은 이들의 지대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수의 임원 및 권력집중과 더불어 레버슨 판사는 PCC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었던 점이 PCC가 수행해야 할 보편적 범주를 축소시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레버슨 판사는 사건에 대한 효과적 조사 진행과 관련한 PCC의 무능은 불만접수자의 사건 해결 의지와는 반대로 처리되곤 하였음을 밝혀냈다고 언급한다. 예를 들어 자율 규제기관으로서 PCC는 우선시해야 하는 인권법(s12 Human Right Act 1998)

과 데이터보호법(s55 Data Protection Act 1998)에 근거하여 사건을 조사할 때에 언론의 비난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뉴스오브더월드의 폰 해킹 사건과 관련한 PCC의 조사는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며 따라서 신용을 잃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비단 폰 해킹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 사건과 관련한 불만이 받아들여졌더라도 그 해결 방안은 언론사를 설득하여 기사를 수정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 PCC는 언론의 이익집단이었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린다.

공무원에 대한 레버슨 청문회 결과에 대한 언급도 눈여겨볼 만한 사항인데, 레버슨 판사는 보고서에서 만연한 경찰의 부패를 확인할 증거는 없었으나 전 경찰청 청장 비서관이었던 존 야테스(John Yates)와 뉴스오브더월드의 관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또한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공공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언론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지난 30년간 정치인들과 언론 사이의 관계는 공적 문제의 인식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음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청문회 중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폰 해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루퍼드 머독과의 연루 혐의를 받았던 전 문화부 장관 제레미 헌트와 데이비드 카메론에 대해선 증거 부족에 따라서 혐의 없음을 공표하였다.

#### — 법령에 기반을 둔 새로운 규율기관 설립 제안

이러한 비판과 함께, 영국 미디어의 이슈와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규율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레버슨 판사가 제시한 새로운 규율기관은 자율기관의 근본은 지키면서 법적인 지지 아래 언론기관들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서술하였듯 레버슨 판사가 새로운 기구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뿐 아니라 언론계로부터의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언론(기사)의 피해자가 법정에 가기 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시스템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레버슨 최종보고서에서 제안한 새로운 규율기구의 시스템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기구의 처리 흐름이 현 PCC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 PCC의 시스템은

1. 불만신고 · 접수
2. 불만해결을 위한 조사
3. 처벌로써 신문사 정정보도 명령
4. 신문사가 PCC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건은 법정으로 이동

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레버슨 판사가 제안한 새로운 기관은

1. 불만신고 접수 및 신문사의 윤리적 행동 감시
2. 불만 해결을 위한 조사
3. 기준법 위반 시 처벌 · 불만신고와 관련한 개선책 마련
4. 피해자의 법정수속과 관련한 중재서비스로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종보고서를 통해 레버슨 판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관은 언론사의 규율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규율기관 설립에 관련한 기준법은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과 업계에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된 규율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준법은 특히, 자료의 획득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취급과 관련한 행동규정, 공공의 관심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경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적절한 대처, 허위사실 유포를 지양하기 위한 정확성과 관련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법적 의무를 정확히 헌법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설기구의 법적 효력 중 흥미로운 사항은 언론사의 기준법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드는 사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PCC의 최대 처벌 방법은 문제시된 신문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판적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신설기구는 적절한 처벌을 가할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 권한에는 최대 1백만파운드까지 매출의 1% 한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처벌의 권한은 법령에 의한 정정보도의 요구권이 있다.

새로 신설될 기구는 언론사들, 정부, 산업적 이해관계에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인사나 국회의원,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기자들을 위해 내부 고발자를 위한 핫라인은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흥미로운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한 독립성과 능동성은 인력 · 재원 확보 및 구성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보고서는 규율기관은 독립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기관,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들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언론계의 영향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구성원의 임명과 관련한 독립성은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인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PCC가 10명의 대중감시단(public member)과 7인의 업계 편집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보고서에 제시된 새로운 규율기관의 임원선정에서, 언론계 전 · 현직 편집인, 국회의원, 국회관료는 제외시킨다는 것이 큰 차이로 하겠다. 이러한 인력 구조는 규율기관의 의미에 충실할 수 있으며 독립기관이 언론계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언론계와 독립기관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져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재원에 관련한 합의는 재원소

요 4-5년 이전에 협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새로운 규율기구는 기준법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지도할 권한, 예를 들어 기사로 인해 야기된 개인에 관한 부당한 기록들을 언론사에게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레버슨은 이러한 사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확인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Ofcom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규제기관이 새로운 기관의 평가기관으로서 위치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구에 참여를 거부하는 신문사들은 미디어 규제기관인 Ofcom의 직접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설기관의 법제화의 위험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사항으로, 보고서는 새로운 기구는 언론계의 편집인에게 출간물에 대한 조언을 할 수는 있으나, 출간을 막을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관심 깊게 봐야 할 사항이다.

#### — 최종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반응

규율기관으로서 보다 강력하고 능동적인 기구의 설립 안을 담고 있는 레버슨 최종보고서 출간 이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기 전 카메론 정부는 바로 레버슨 판사가 지적한 기관설립과 관련한 법제화가 언론개혁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러한 법제화는 언론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카메론 정부의 입장은 레버슨이 주장하듯 새로운 기구설립을 위한 관련법의 재개정은 거부하되, 벌금과 관련한 다른 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카메론 수상은 새로운 규제기관의 법제화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론계를 향해 빠른 시간 내에 레버슨 최종보고서의 법제화와 관련된 문제를 제외한 다른 사항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다. 카메론 정부와는 반대로,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은 이러한 법제화를 지지하며 규율기구 법제화를 위한 초안을 작성하며 카메론 내각과 강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메론 정부의 지지에 힘입어, 영국언론계는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레버슨 최종보고서에 부합하는 방식을 고안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언론계는 어떻게 레버슨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식 발표를 하는 동시에, 언론기관의 임원들은 법제화에 근거한 기구 설립에 대한 압력을 불식시키며 여론에 상응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임을 가지고 있다.

레버슨 최종보고서에 대한 정부여당과 언론계의 반응은 결국 레버슨 판사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전달한 언론개혁에 대한 의견들이 관철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론 및 폰 해킹 피해자들의 분노를 증가시켰다. 현재 레버슨 최종보고서와 관련된 현재 쟁점은 새로운 언론분쟁해결기구가 정부주도, 법제화 안에서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현 자율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언론계 스스로의 변혁을 도모할 것인가의 프레임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 PCC, 프라이버시 관련 편집인 행동규정 발표

PCC는 사생활과 관련한 새로운 편집인 행동규정을 11월 15일 발표하였다. 편집인과 저널리스트들에게 실용가이드를 제시한다는 명목으로 발표된 이 문서는, 완전히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과거의 사건 케이스들을 소개하며 PCC가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사건을 조사할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편집인 행동규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본인 허

락 없이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제삼자 및 비-언론인이 생산하는 모든 편집된 콘텐츠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특이사항은 단순하고 용이하게 취득된 온라인 정보를 대중의 관심 충족이라는 목적으로 재생산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된 편집인 행동규정은 총 7개의 범주로 세분되어 있다:

1. 정보의 질은 어떠한가? (얼마나 개인신상 정보를 다루고 있는가?)
2. 개인의 신상과 관련하여 이전 자료에서 무엇이 드러나 있었는가?
3. 만약 자료출처가 온라인이라면 누가 처음으로 그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하였는가?
4. 개인이 정보를 개인적 용도로 게시하진 않았는가?
5. 어떻게 자료가 소개되는가? (자료의 공개가 개인에게 굴욕을 주는가?)
6. 새로운 자료의 출간이 이미 공개되어진 유사하거나 관련된 정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정당한가?
7. 기사출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요소보다 출간을 통한 대중의 관심 충족이 더 중요했는가?

개정된 행동규정과 PCC가 제시한 관련사례 중 흥미로운 부분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행동규정 개정사항 중 ‘정보의 본질’과 관련하여 PCC는 2010년 바스커빌(Baskerville)이 데일리 메일(Daily Mail)과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를 상대로 낸 불만접수 건을 예로 들었다. 관련 사건은 공무원이었던 바스커빌이 자신의 부서(교통부)와 관련된 사항을 올렸던 자신의 트윗글이 두 신문에 게재된 것

에 불만을 접수하였다. 이론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 글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팔로워만을 위해 글을 썼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불만을 접수했다. PCC는 정보의 질과 어떻게 글이 신문 출간을 위해 이용되었는지에 판단근거를 두었다. 문제가 된 글은 게시자의 공무원 직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었고, 신문사는 이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심한 우려를 주제로 하여 글을 쓴 것이다. PCC는 바스커빌이 백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고, 프라이버시 세팅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로인해 PCC는 신문사에 의해서 배포된 자료들은 부당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바스커빌의 불만사항을 기각하였다.

PCC가 ‘이전 출간물들의 범위(The extent of previous publications)’와 관련하여 행동규정의 예로 2010년도 연예인 데니 미노그(Dannii Minogue)가 데일리 미러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에 주목했다. 데니 미노그는 PCC에 그녀의 임신사실이 그녀의 임신에 대한 공식입장이 나오기 전에 데일리 미러에 의해 기사화 된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불만을 표명하였고 PCC는 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데일리 미러는 공인의 12주 임신초음파 검사 이전에 허락 없이 이와 같은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데니 미노그와 관련한 정보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고 블로그와 호주 신문 웹사이트에 전날 게재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사의 지면에 이 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PCC는 데일리 미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데니 미노그의 불만사항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데일리 미러가 주장한 블로그나 웹사이트의 정보 성격이 사실 확인적인 글이 아니라 추측성 글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즉, PCC는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근거가 신문기사의 당위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타당성을 뒤받침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PCC는 편집인들은 이미 개인용으로 출간되어진 원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이 항목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자료들을 이용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한 여성이 로디드(Loaded) 잡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 내용을 예로 들었다. 한 여성이 몇 년 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사진들이 로디드 잡지의 ‘공개수배 : 커다란 가슴을 가진 여성’이란 제목의 기사에 무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그녀의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PCC는 이 여성의 불만신고를 받아들였는데, 이유는 어떠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불만신고자가 공인이 아니며, 18세 소녀로서 그러한 사생활 침해를 당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PCC는 이번 개정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무분별한 신문보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갱신된 새로운 행동규정은 지난 8월에 해리 왕자의 나체사진이 더 썬(The Sun) 지로 인해 퍼진 사건으로 인한 것이며, 사건과 관련하여 왕실이 PCC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행동규정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는데 모든 언론이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 코미디언 프랭키 보일, 데일리 미러 상대 손해소 승소

BBC쇼 ‘Mock the Week’을 진행하는 프랭키 보일(Frankie Boyle)이 지난 10월 23일 데일리 미러(Daily Mirror)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데일리 미러는 7월 19일자 신문에 ‘인종차별주의자 코미디언

프랭키 보일’이라는 제목으로 그가 진행하는 BBC쇼 ‘Mock the Week’에서 흑인들을 웃음거리로 이용했으며, 이로 인하여 그가 진행하는 쇼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기재했다. 보일은 이에 모욕죄를 근거로 데일리 미러를 고소하였다.

그는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반-인종차별주의자라고 반박하였으며, BBC에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데일리 미러가 자신과 관련한 잘못된 기사로 자신을 모욕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데일리 미러를 발간하는 MGN(Mirror Group Newspapers)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보일에 대한 기사는 사실이거나 공익과 관련된 충실한 의견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MGN은 기사에 언급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은 보일이 해고(Sack)되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MGN은 이와 관련, 보일이 아나운서 흥내를 내며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희화한 사례를 배심원에게 예로 들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칸다하르 지역에서 폭탄이 터져 두 명의 영국 군인, 세 명의 유엔 구조대원 그리고 다수의 파키(Pakis: 파키스탄인을 표현하는 부정적 은어)가 숨졌습니다.’ 이에 보일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러한 예는 보일이 인종차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종차별을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개그를 만드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10월 23일 대법원은 데일리 미러의 기사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보일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대법원은 MGN이 주장한 기사 게재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소로 인해 보일은 인종차별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 54,000파운드(한화 약 1억원)를, 사퇴압박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 4,250파운드(한화 약 8백5십만원)를, 법정비용으로 100,000파운드(한화 약 2억원)를 받게 되었다.

## 데일리 메일과 데일리 미러, 법정모욕죄로 벌금형

런던 고등법원은 지난 10월 22일 데일리 메일(Daily Mail)과 데일리 미러(Daily Mirror)가 2011년 6월 게재한 레비 벨필드(Levi Bellfield)의 밀리 도울러(Milly Dowler) 유괴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와 관련 법정모욕죄로 각각 10,000파운드(한화 약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두 신문은 벨필드의 밀리 도울러 유괴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를 유죄판결이 있기 전에 게재하였다. 기사에는 벨필드와 그의 전처 및 전 애인, 장애아를 폭행, 강간한 전력과 관련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었다. 문제가 된 사안은 기사가 배포되었던 당시에 배심원들은 그가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 혐의 중이었다는 것이었고, 그 기사의 내용들은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보고받은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신문의 기사가 문제가 된 것은 2011년 6월 법정에서 벨필드의 유죄판결을 내려지는데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판사에게 보고되어졌기 때문이다. 두 신문은 그들의 기사가 심각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장관인 도미니크 그리브(Dominic Grieve)는 두 신문사의 관련 기사는 심각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판결과 더불어, 그리브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왜 미디어들이 법정모욕죄를 조심해야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판결의 당위성을 재차 확인하였다.